기본계획·기본설계·실시설계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



준

[시행 2021. 7. 14.] [해양수산부훈령 제603호, 2021. 7. 14., 일부개정]

해양수산부(항만기술안전과), 044-200-5954

- 제1조(목적) 이 기준은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3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기본계획·기본설계·실시설계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) 이 기준은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」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계획・기본설계・실시설계(이하 "설계 등 "이라 한다)용역사업자(이하 "용역사업자"라 한다)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- 제3조(세부평가기준) ①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.
 -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의한다.
- 제4조(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) ①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 - ②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2 규정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±2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.
 -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,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, 해당용역 규모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 서는 아니 된다.
 - ④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「(계약예규)공동계약운용요령」(기획재정부 계약예규)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하거나, 제3조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변경 또는 조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.
 - 1.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(안)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.
 - 2.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(안)에 대한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「건설기술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한다.
 - 3.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 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⑥ 발주청은 제3조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제5조(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)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,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.
 - ②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.
 - ③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 자료를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평가 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 -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(CEMS)을 통하여 진행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,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하며,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⑤ 평가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오류,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.
- 제6조(평가결과 공개 등)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② 발주청은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,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,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- **제7조(이의제기)**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제28조에 따라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- 제8조(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한다.
 - 1.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
 - 2.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 - ② 평가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 -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.
- 제9조(재검토기한) 해양수산부장관은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603호,2021.7.14.>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설계 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